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부터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나, 충청북도 내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5개뿐입니다. 이에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실현 및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6조)

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관한 지원사업과 병원 이용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는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평일 야간 및 휴일 경증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총 95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임

<표> 전국 달빛어린이병원 현황(2024년 10월 10일 기준)¹⁾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4	13	7	2	7	2	6	1	1	25	2	5	5	5	3	-	7	3

- 충청북도 내에는 총 5개소²⁾가 운영되고 있어 소아청소년환자를 둔 부모·가족들의 추가 지정 요구가 있는 상황임

1) 중앙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 자료(<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

2) 충청북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현황

의료기관명	소재지	운영형태	운영시간	지정기간
아이웰 어린이병원	청주	일반	(평 일) 18:00 ~ 23:00 (토·일·공휴일) 09:00 ~ 18:00 ⇨ 주 43시간	2023.1.1.~2024.12.31. (2년간)
웰니스 어린이병원	청주	일반	(평 일) 18:00 ~ 23:00 (토·일·공휴일) 09:00 ~ 18:00 ⇨ 주 43시간	2023.5.1.~2024.12.31. (1년8월)
조엘소아 청소년과의원	청주	일부요일 운영	(토·일·공휴일) 09:00 ~ 21:00 ⇨ 주 24시간	2023.12.1.~2025.11.30. (2년간)
베스티안병원	청주	일반	(평 일) 18:00 ~ 23:00 (토요일) 09:00 ~ 18:00 (일·공휴일) 10:00 ~ 18:00 ⇨ 주 42시간	2024.04.15.~2026.04.14. (2년간)
늘푸른소아 청소년과의원	충주	일부요일 운영	(토·일·공휴일) 08:30 ~ 18:00 ⇨ 주 19시간	2024.06.01.~2026.05.31. (2년간)

-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 감소 및 폐업 증가, 의정갈등 등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나. 제정 가능성 및 절차적 타당성

-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 제공을 확대하여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3)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또한, 관계 부서(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협의, 필수부서 의견검토(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와 조례안 예고(접수의견 없음)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 등

- 이 제정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문별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심야시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도록 명시함

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안 제2조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 시간과 그 대상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3조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에 따르거나, 이에 준해 지정 및 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항에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 등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증 소아청소년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제2항에서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병원 진료와 복약지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효성 있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도 및 감독하도록 규정함
 - 정책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내용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6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소와 취소 후 지원사업비 환수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지원 금액 환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함

- 안 제7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에 관해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하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8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 그 밖에 관계 부서인 보건복지국은 제정안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외래진료 제공을 확대하여 경증 소아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함
- (타당성) 충청북도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
 - 특히,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아청소년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사각 시간대 해소를 통한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됨
-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